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60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최보윤・박성민・이만희

김소희 · 김선교 · 김은혜

최수진 · 김선민 · 주진우

백종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하였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의(다)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사회도 국제 표준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 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계에서 오랫동 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개정으로 이르지 못한 실정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장애평등정책법안」 발의에 맞춰 현행법에 장애인지 예산·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제65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58호) 및「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59호)의 의결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및 제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4(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장애평등정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평등(이하 "장애 평등"이라 한다)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장애평등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5(장애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 이 장애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 (이하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장애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장애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장애평등 개선 효과분석 및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장애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장애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7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u>	제8조의4(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
	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장애평등정책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
	평등(이하 "장애평등"이라 한
	다)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한 보고서(이하 "장애인지 기
	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
	<u>하여야 한다.</u>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안에는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
	<u>서가 첨부되어야 한다.</u>
	③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는 장애평등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을 포함
	<u>하여야 한다.</u>
	④ 그 밖에 장애인지 기금운용
	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
<u><신 설></u>	제8조의5(장애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장애평등을 개선하는

-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 하는 보고서(이하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 여야 한다.
-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 서에는 장애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장애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장애평등 개선 효과 분석 및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 다.
- ④ 그 밖에 장애인지 기금결산 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